

재무 회계 규정

제 1 장 회 계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우리 연맹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 회계 및 재무처리와 입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연맹의 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기본원칙) ① 연맹의 모든 재원은 연맹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재원의 관리 및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관에 따른다.

제 5 조 (총계주의 원칙) 동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그 내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③ 예산의 편성은 <별표>의 과목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등의 집행 또는 예산의 추가 집행에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분의1을 넘을 수 없다.
③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예산안의 편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표>의 수입 지출 과목 구분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부터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1.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수입과 목적 사용에 따른 비용
2.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 비용의 증가분

제 10 조 (예산의 전용)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 항간의 전용 시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전용 시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2. 목, 간 전용 시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지출 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약이 있는 기부금으로서 사용기간을 지정한 경우와 년차 사업일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하다.

제 12 조 (결산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수입·지출의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년도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수입과 지출 사무의 관리) ① 이사장은 연맹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임원 또는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연맹 수입 및 지출 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둔다.

제 14 조 (회계 담당 직원의 책임 등) ① 회계담당자는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규정된 회계담당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사무총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수입금의 관리)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연맹의 명의로 개설한 금융거래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국 직원이 기부금품 등을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즉시 회계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회계 담당자는 수납한 수입금을 현금 수입 장부에 기재한 후 근무시간 24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을 현물로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가액을 계산한다.

1. 해당 물건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장부 및 문서
2. 현물을 판매하여 수입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제 16 조 (지출절차) ① 해당 사업의 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후 회계 담당자에게 지출을 신청한다.

② 회계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출 증거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출을 거부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출 증거서류는 회계 담당자 및 팀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의 3항의 지출 증거서류는 다음 1호부터 3호와 같으며, 사업자가 아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4호에 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의한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영수증
4. 기타 영수증

제 17 조 (수입절차) 수입 발생 시에 회계 담당자는 당일 해당 전표를 발행하고, 결재권자의 승인 후 보관한다.

제 18 조 (기부영수증의 발급) ① 연맹은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한다.

② 영수증 발급 시기는 기부자의 영수증 발급요구가 있을 때 혹은 연말에 일괄 발급하며 기 발급된 영수증에 대하여 요청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재발급한 영수증은 '재발급' 이라고 기재한다.

제 19 조 (기부영수증의 보관 및 보고) 기부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의 기부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제출의무(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 일련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 2 장 재 무

제 20 조 (용어의 정의) 이 재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운영성과표는 일정기간 동안 연맹의 활동보고서를 말한다.

② 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보통순자산은 사용 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2. 사용제한순자산은 기부자가 원금 또는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의 사용용도나 시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 자산이다. 사용제한순자산은 명시된 사용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기간이 경과 하면 보통순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3. 기본 순자산은 법적으로 또는 기부자가 영구적으로 원금의 사용, 또는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의 사용을 제한한 자산이다.

③ 현금성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화,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으로 구성되는 현금과 큰 거래비용 없이 통화, 통화대용증권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현금등가물로 구성된다.

④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단기 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고 장기 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⑤ 유무형자산 취득용자산은 기부자에 의해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지정된 현금 자산,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을 말한다.

⑥ 사업이란 연맹이 추구하는 본연의 사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 조직의 구성원 또는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 21 조 (회계처리 원칙) 연맹의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한 복식부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재무제표에는 연맹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한다.

제 22 조 (재무제표의 종류) 연맹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무상태표
- ② 운영성과표
- ③ 주식 및 부속명세서

제 23 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금융자산의 평가) 연맹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은 발생주의와 취득원가주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되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현행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제 24 조 (주식) 금액이나 성격이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석의 구분 표시도 생략할 수 있다.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 25 조 (재무제표의 형식) 재무제표는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과 예산을 대비하여 작성하며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에 있어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표시 내용) 재무상태표는 연맹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한다. 다만,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세부보고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27 조 (항목 나열의 기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나열한다.

제 28 조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 투자증권과 단기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맹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성항목 별로 별도 표시하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29 조 (유형자산의 표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설비자산 등 적절한 유형자산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항목 각각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 등의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30 조 (기부금품의 표시방법) 기부자가 토지, 설비 및

무형자산,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현금자산,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각각 유무형자산취득용 자산과 투자용 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31 조 (총액표시의 원칙)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당해 자산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32 조 (순자산의 구분) 순자산은 자산 사용의 제한에 따라 기본순자산, 사용제한 순자산,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산 사용에 대한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33 조 (기본 순자산) 기본순자산 중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영구 보존하여야 하는 자산 및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투자하여 영구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내에 구분 표시하거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34 조 (사용제한 순자산) 사용제한순자산 중 특정 활동에 사용될 순자산,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되어야 할 순자산, 특정 기간에 사용될 순자산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순자산은 사용제한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35 조 (보통 순자산) 보통순자산은 사용제한순자산 또는 기본순자산으로 부터의 운용수익 중 사용에 제한이 없는 금액,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 용도 제한이 없는 기부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및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제 36 조 (표시 내용) 운영성과표는 연맹 전체를 재무제표 작성단위로 보아 작성하고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순자산의 변화를 표시한다.

제 37 조 (표시 구분)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본순자산, 사용제한순자산, 보통순자산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투자손익, 사업비용, 모금비용,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 38 조 (총액표시원칙)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9 조 (주식 표시 내용) 다음 사항은 재무제표 본문에 추가하여 주식으로 기재한다.

- ① 연맹의 개황, 주요사업내용, 최근의 사업환경변화(연맹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 포함)
- ② 연맹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포함)
- ③ 회계변경의 이유와 재무제표에 미친 중요한 영향
- ④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중 사용이 제한된 현금자산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주식에 포함한다.
 1. 기부자가 용도를 제한한 자산의 내역과 금액
 2. 담보제공자산의 내역과 금액
 3. 통합하여 보고한 재무제표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내역과 금액
 4. 연불로 구입하는 자산의 내역과 금액
 5. 기부 받은 비현금자산의 내역과 금액
 6. 교환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금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항목의 내역과 금액
- ⑤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과 기타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⑥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⑦ 관련 법규 등의 요구가 있는 사항

제 40 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연맹이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제 41 조 (서비스 기부의 인식) 연맹이 서비스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당해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①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연맹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 ② 기부가 없으면 그 서비스를 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 42 조 (기부품의 인식) 기부 받은 전시 장비 또는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재무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 증진을 위하여 공공 전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② 보호, 관리 및 보존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③ 연맹의 방침에 의해 수집품의 판매대금은 지속적으로 다른 수집품의 취득에 사용한다.

제 43 조 (기부의 표시) 기부금은 운영성과표에 기본순자산의 증가, 사용제한순자산의 증가, 보통순자산의 증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부 받은 회계기간 내에 기부금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보통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한다.

제 44 조 (회비수입의 인식) 회비수입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제 45 조 (감가상각) 연맹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전시 장비와 이에 준하는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유물 등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당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
- ② 재무상태표일 현재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주요 유형별 성격과 금액
- ③ 재무상태표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의 주요 유형별 금액과 총액
- ④ 감가상각 방법

제 3 장 입찰관리

제 46 조 (입찰관리의 목적) 연맹 정관 제46조(연맹 재산의 유지관리와 처분 및 운용) 제2항에 따라 연맹 재산의 유지관리와 운용 방법에 따른 입찰관리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7 조 (적용대상) 이 규정에 따른 입찰은 물품이나 용역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일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연맹 소유 건물, 구축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2. 연맹 KARL지의 편집 및 인쇄 등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연맹의 목적 사업에 따른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 48 조 (입찰의 방법)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9 조 (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이사장은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 (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 51 조 (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52 조 (입찰서 투찰) 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②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할 수 없다.

제 53 조 (입찰서 개찰) 이사회에서는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제 54 조 (낙찰자 선정) ① 이사회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제49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55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 55 조 (재공고) ① 이사회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6 조 (입찰공고 방법) 이사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맹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58 조 (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규모·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참가 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7. 제50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0. 제63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제 59 조 (참가자격의 제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 등을 연맹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자
5.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60 조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 61 조 (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제 62 조 (계약체결) ① 계약은 이사회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연맹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67조 제3항

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제 63 조 (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을 연맹에 귀속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연맹에 귀속한다.

제 64 조 (하자보수 보증금)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 65 조(보증금의 반환) ① 이사회는 제63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 ① 제1장 회계와 제2장 재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2017.7.20. 제정)를 우선 적용하고,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원용한다. 다만 수익사업의 회계처리에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② 제3장 입찰관리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 <별표2>를 개정 시행한다.